2024년도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신청안내

2025 .01 .13 , 인사총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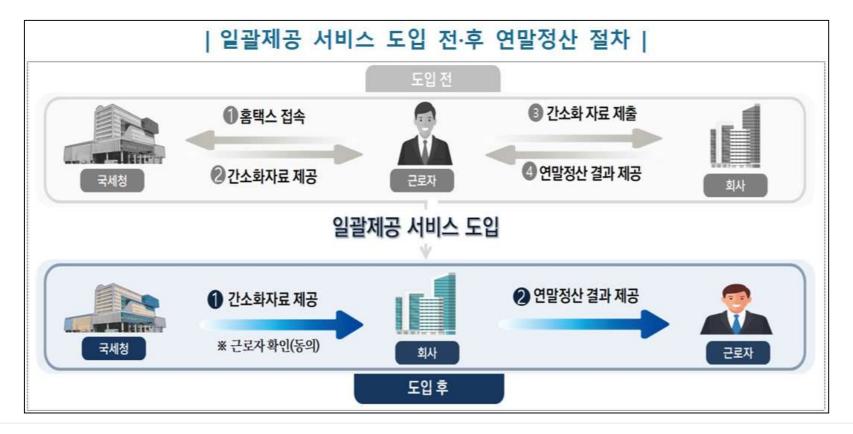
시행 목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방식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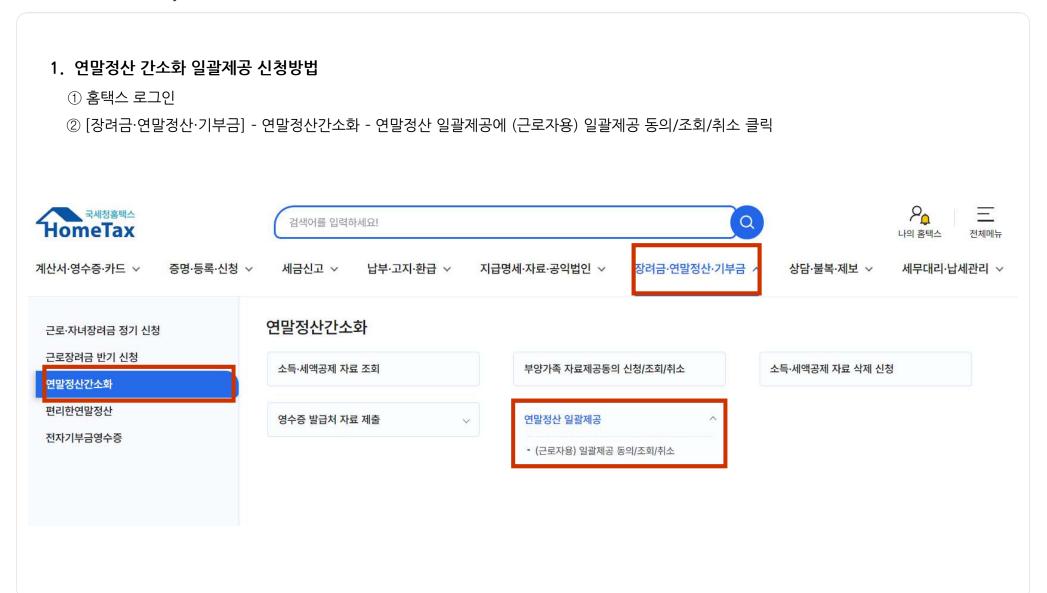
(즉, 개인이 별도로 인사총무팀에 제출하던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방식)

※ 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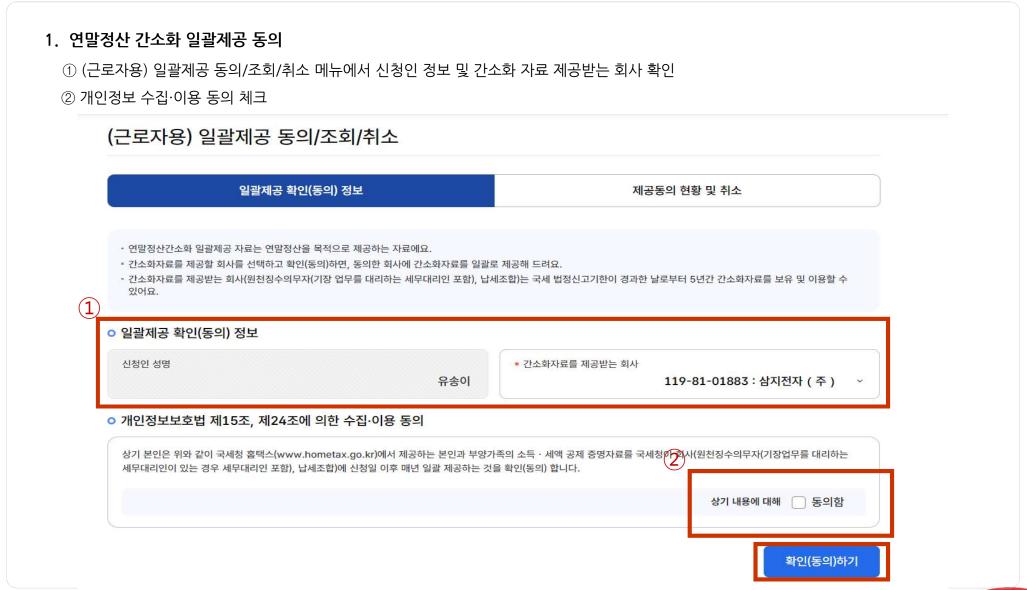
근로자(직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로 국세청이 회사에 근로자(직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조회



자료제공 동의, 조회



자료제공 동의, 조회

-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 ① 제공동의 현황 → 내용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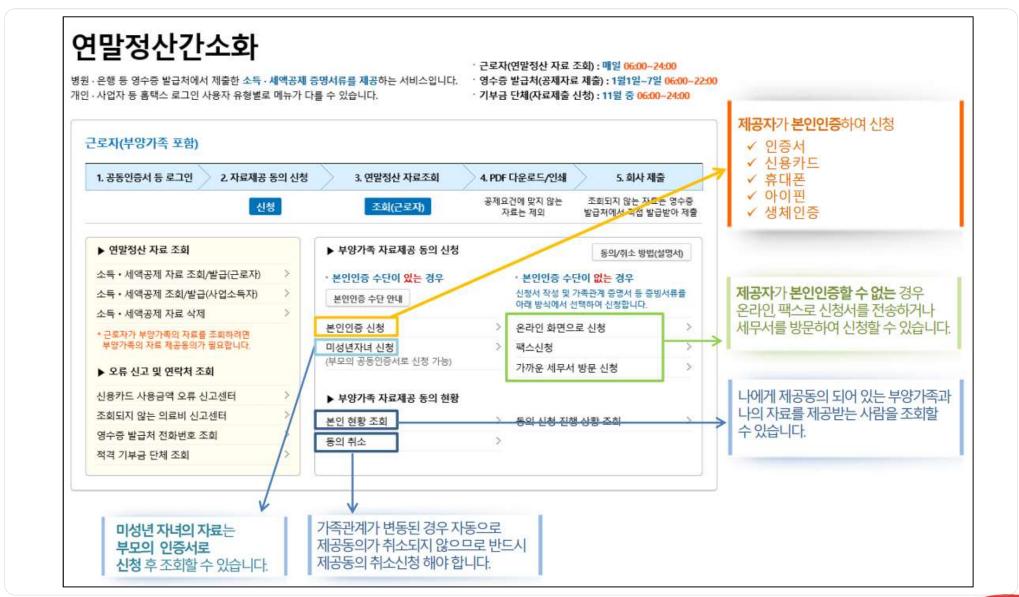
부양가족 자료제공

3. 자료제공 동의 현황

- 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 삭제
- ② 제공동의 현황 조회 후 확인



부양가족 자료제공



부양가족 자료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A

Q.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A.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Q.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 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할까?

A.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Q. 일괄제공 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

A.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기존에 자료제공을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제공 도의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Q.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고려해 삭제하거나,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